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3호서식] <개정 2025. 10. 1.>

양육비 선지급 []취소 []중지 []변경 통지서(양육비 채무자용)

※ 뒤쪽의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양육비 채무자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		
선지급 대상자	성 명			

[] 취소

1.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8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**양육비 선지급 결정이 소급하여 취소**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지원자녀명	대상자와의 관계	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선지급금	선지급 시작 달	선지급 취소 대상 기간
		원	년 월	~

2. 선지급 결정 취소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양육비 선지급금은 선지급 대상자가 반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.
3. 선지급 시작 후 취소 대상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받은 양육비 선지급금이 있다면, 선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10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며,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.

[] 중지

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8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**양육비 선지급이 중지**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선지급 중지가 결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선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
지원자녀명	대상자와의 관계	사유	선지급 중지 결정월
			년 월

※ 중지사유

가. 양육비 채무자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경우

나. 자녀가 「민법」 제4조에 따른 성년이 된 경우(「민법」 제826조의2에 따른 성년의제를 포함합니다)

다. 그 밖에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가 상실된 경우

[] 변경

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8제3항에 따라 양육비 채권금액의 변동으로 아래와 같이 **양육비 선지급 결정이 변경**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선지급 변경이 결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.

지원자녀명	대상자와의 관계	선지급금(월)		선지급 변경 결정월
		당초	변경	
		원	원	년 월

※ 업무담당자: 부서명 성명 문의 전화번호

년 월 일

양육비이행관리원장 직인

안내사항

양육비 채무자가 납부해야 하는 양육비 선지급금(회수금액), 납부기한, 납부기관 등은 별도로 발송되는 양육비 선지급 회수 통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이의신청 안내

위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을 받은 날부터 **30일** 이내에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